

국내외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

A STUDY ON THE EDUCATION TRAIN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ND ABROAD

김동희* · 김태환**

Kim Dong hee · Kim Tae Hwan

요 약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keywords : 민간경비, 교육훈련, 경호경비, 민간경비산업

1. 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특징

1) 미국

미국 연방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개입***을 하고 그 외 모든 권한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州)정부 중심으로 각종 자격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 고용기준법(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Standard Act of 2002)에 따라, 경비원의 전과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Fischer and Green(2004)은 미국은 각 주마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신입 민간경비원의 경우 최소한 16시간의 교육훈련 받은 뒤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경비 규제’인데, 이민형(2010)은 이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경비업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자율규제방식, 둘째, 소송에 의한 규제방식,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경비업체간의 협의체 구성에 의한 규제방식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국가적 규제방식을 일부 탈피하는 효과가 있을 수

* 정회원 · 김동희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석사 shamega@naver.com

** 정회원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teahwan@youngin.ac.kr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비원은 학력이나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장배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요원에 의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비원의 자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선발 및 교육훈련은 한국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관리자의 경우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공배완 2007:22).

올해 4월 10일에 발표된 “2016년 2월 새로운 CPP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CPP 시험영역이 2014 직업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CPP시험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테스트로 구성 될 것이며, 국가별 특정 코드나 법률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영역은 기존과 다르게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립 영역이었던 법률영역이 Business principles and Practice(사업원칙과 실무), Investigation

(조사), Personal Security(개인경호)영역으로 각각 배정 될 것이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최근 용어를 반영한 Task 수정, Knowledge Statement 추가 등 새롭고 간결한 것 들이 있다.

2) 영국

자격증의 종류로는 현금호송, 신변경호, 출입감시, 열쇠관리, 공공감시, 일반경비, 차량 견인·도난방지가 있다. 열쇠관리를 제외한 6개의 자격증은 다시 현장요원과 사무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현장요원은 당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18세 이상의 연령, 신분 및 전과조회, 필수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경비업무에 종사할 때는 항상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를 착용해야 한다. (사무직 제외)

경비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업체의 이사 또는 파트너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약식 기소일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5,000(한화 약 8백여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형사법원에서 기소 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제한이 없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민간경비업 규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인증계약자제도(ACS)이다.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ACS를 심사하고 등록할 수 있는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경비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고객들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비회사들의 자발적,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각각의 경비업무에 필요한 자격증별 교육훈련을 모듈로 지정하여 각 자격증간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추가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게 교차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자격증은 현장과 사무직으로 구분함에 따라 사무직의 경우 교육훈련 등을 면제시킴으로써 자격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넷째, 자격증을 발급받기전이라도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자격증특별허가(LDN : License Dispensation Notice)를 받은 인증계약자는 전담직원을 주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전배치가 가능하다. 단, 아동이나 취약한 성년을 위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불가능하며, 한도는 일반적으로 15%가량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3) 일본

일본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1호(시설경비, 순찰업무, 보안경비, 공항보안, 기계경비) 2호(교통유도 경비, 혼잡경비), 3호(귀중품 운반경비, 핵연료 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 4호(신변)으로 나눈다. 일본의 경비관

경찰/경호/경비 분과 발표

런 자격제도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경비원검정제도 등이 있으며 검정제도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격검정 취득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각 지역의 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와 실기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식과 경비원특별 강습사업 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여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명서를 주는 방법이 있다.

2005년 11월 21일 시행된 개정 경비업법 제18조는 ‘경비업무 실시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는 “검정 합격 경비원의 배치 기준 규칙 2 조”에 따라 그 종류마다 검정 합격 경비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자격증은 1. 공항 보안 경비업무(항공기에 반입되는 물건의 검사에 관한 것에 한함), 2. 시설 경비업무(기계 경비업무, 항공기 경비업무 제외), 3. 혼잡 경비업무, 4. 교통 유도 경비업무, 5. 핵연료 물질 등 위험물 운반 경비업무, 6. 귀중품 운반 경비업무로 총 6가지 이다.

경비원의 교육은 신입교육과 현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입교육의 기본교육은 15시간, 업무별 교육 15시간이며, 현업교육은 교육기간마다 기본교육 3시간, 업무별 교육은 5시간이다.

4) 프랑스

프랑스의 민간경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민간경비업(Réglementant l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부터였다. 2009년에는 민간경비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법률 제 2009-137호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경비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자격증 신청자는 전과가 없어야 하고 도덕성과 직업 적합성 그리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에서 관리되는 전문자격증은 사설탐정 분야와 경비업자를 제외한 시설경비, 운송경비, 감시견 이용, 공항이나 항만경비, 신변보호, 전자경비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경비원에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설탐정 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나 협회 자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과 업무지침 외에는 공인된 자격증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민간경비분야에서 자격요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비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유로(한화 3,480만 원가량)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없이 민간경비활동에 종사한 경비원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민간경비법 제 14조).

5) 독일

독일 최초의 민간경비회사는 1901년 설립되었으며, 1927년 2월 7일, 「영업법」에 관한 수정법안을 통하여, 동년 경비영업을 위한 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영업법 제 34조a」가 제정되어 허가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거의 70년 동안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개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독일은 민간경비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며 영업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1994년 “범죄대책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절차에 관한 안내가 요구되었으며,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후 2002년 8월에 “경비 및 보안근무를 위한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관련법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민간경비 교육은 2002년 「경비 및 보안 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령」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민간경비 책임자를 위한 80시간의 교육과 경비원의 4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지만, 2002년 개정 후에는 경비원에 대한 3년동안 총 880시간의 정규 직업교육을 통해 시험을 치른 후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민간경비학교(DSA : Deutsche Sicherheits

Akademie)가 설립되었다.

독일 민간경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발표된 경비 및 보안 전문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3년 동안 840시간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각 주는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각 주의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6) 호주

호주의 교육훈련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일원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국가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자격체계(AQF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동적이고 활용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격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 각 과정들은 AQF를 기본으로 하되 각 주마다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자격 취득절차, 등록 및 각 과목별 시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각 과정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정부에서 정하며, 선택과목들은 각 주(州)별로 정해진 과목으로 나뉜다.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교육훈련을 이수 후 수수료등을 지참하여 공정거래소(Office of Fair Trading)에 등록해야만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호주의 교육훈련의 특징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격체제를 설립하고, 취득한 자격들 간에는 사전학습인증제(PRL)을 통해 인증이 되도록 하여 교육생들의 접근성과 연속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경비원 교육훈련을 세계 각국의 교육훈련체제와 비교해보면, 다양화와 진일보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 신변, 기계경비로 나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과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교육비용을 경비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교육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 일하고 싶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교육훈련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의 성과를 올려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질향상은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비원에 대한 인식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각국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자율규제방식이나 소송에 의한 규제방식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러운 교육 유도, 영국은 인증계약자제(ACS)를 통한 경비업자의 자발적 인증 및 인증마크를 사용 유도, 일본은 전문화된 교육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경비업무를 구분하여 반드시 검정을 치루게 한다.

프랑스는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요건 철저 관리, 독일은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민간경비원 훈련을 강조한 독일민간경비학교(DSA) 교육, 호주는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일원화 및 국가정책목표로 추진 그리고 사전학습인증제(PRL)을 통한 인증이다.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훈련제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민간경비 산업으로 거듭나 더욱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길 기대한다.